

보도일시	2021. 9. 28.(화) 11:00 이후(국무회의 종료 후) / 총 6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과장 강검운 서기관 박신원	044-202-8950 044-202-8951

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, 국무회의 의결

-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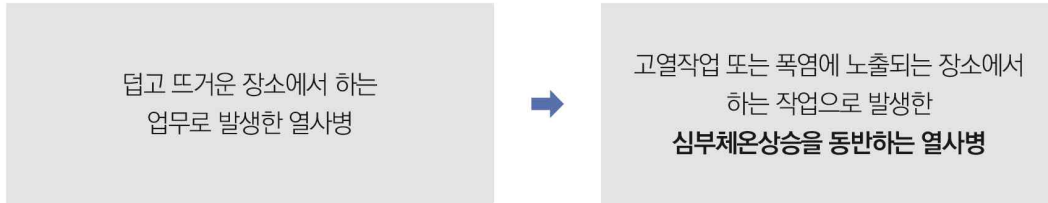
- 정부는 9월 28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」에 대해 심의·의결하였음
  -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,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
    -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①인과관계 명확성(급성) ②사업주의 예방가능성 ③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
    -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,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,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하였음
  - 아울러,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·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음
  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
    -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, 필요한 예산, 전문인력,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·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,
  -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

-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,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
-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,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,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음
  - \* 안전보건교육의 주요 내용: △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△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
  - \*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의 주요 내용: △사업장 명칭 △재해발생 일시·장소 △피해자 수 △재해 내용·원인 △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
-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·사단체, 협·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음
- 특히,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‘적정한 예산 편성’과 ‘충실하게 업무 수행’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였으며,
-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하였음
- 고용노동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·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(8.30.)하였으며
-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·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임
- 아울러, 중대산업재해 위반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실무 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서기관(☎044-202-8951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**직업성 질병(별표1)**

**① ‘열사병’ 발생 원인 및 질병특성 구체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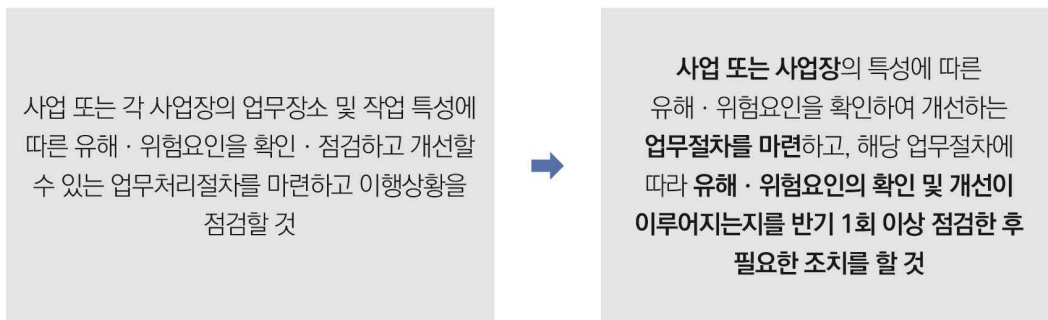


**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·이행(제4조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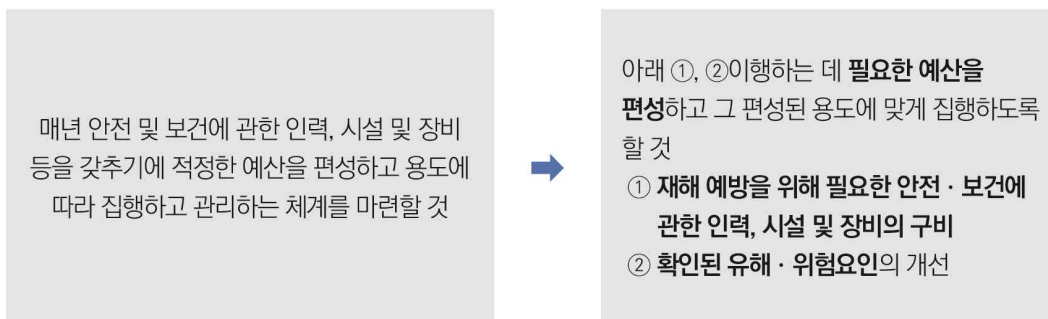
**① 해석상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“사업 또는 사업장”으로 문구 통일**

\*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의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“사업장”을 기준으로 규정

**② 업무처리절차 마련 후 해당절차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(반기 1회)하고,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수정**



**③ 적절한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, 현장에서 축소 해석되지 않도록 “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”임을 명시하는 등 수정**



**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방안 구체화**

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



법령상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,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·관리할 것

**5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규제완화법 등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배제되지 않도록 문구 수정**

**안전보건교육(제6조, 별표4)**

**1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주요교육 내용 수정, 교육대상자 통보 내용 및 절차, 이수확인서의 발급 등 절차 정비**

1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
3.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



1.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
2.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

**2 과태료 일반기준에 맞춰 감경가능 사유 추가, 감경기준 정비 등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**

• 개별기준
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(공사금액 50억원 미만)	5백만원	1천만원	1.5천만원
그 밖의 경우	1천만원	3천만원	5천만원



- 사업·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 
- 1/2 범위에서 감경 가능

• 개별기준

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천만원	3천만원	5천만원

**중대재해처벌법이란?** (중대산업재해 부분)

※시행일 : '22.1.27.(50인 미만 사업장 등 '24.1.27.)

-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,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,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
- 사업주 ·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

[사망시]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
 [그 외]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
 \*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,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/2까지 가중  
 [양벌규정(법인)]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,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

**중대산업재해란?**

- 산업재해 중

[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]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· 부상 · 질병을 의미

-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
- ② 부상자 2명 이상 \*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
-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

\*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(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)/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/스티븐스존슨 증후군/독성간염 / 혈액전파성 질병(B형간염, C형간염, 매독,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) / 렙토스피라증 / 탄저 · 단독 · 브루셀라증 / 레지오넬라증 / 감압병 · 공기색전증 / 산소결핍증 / 급성방사선증 · 무형성빈혈 / 열사병

**사업주 ·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?**

**사업주**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(개인사업주에 한함)  
**경영책임자** 사업을 대표 ·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·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(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공기업의 장,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)

※ 단,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

- 사업주 · 법인 ·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· 운영 ·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·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

종사자 근로자,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·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



###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
- ▲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  - ▲ 안전·보건업무 총괄·관리 전담조직(500인 이상,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)
  - ▲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  - ▲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 및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·집행
  - ▲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(권한과 예산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·관리)
  - ▲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배치(산안법 상 기준 이상)
  - ▲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  - ▲ 중대산업재해 발생(급박한 상황 포함)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
  - ▲ 도급,용역,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및 관리비용·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, 이행여부 점검
- \*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

###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
### ③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
### ④ 안전·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▲ 안전·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(안전·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)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
- ▲ 유해·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
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, 5년간 보관하여야 함(소상공인 제외)

## 안전보건교육과 공표

### ● 중대산업재해 발생 → 안전보건교육(20시간) 의무(교육비용 본인부담)

**주요내용** ▲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▲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

**주요절차** 교육기관,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(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·법인의 경영책임자)에게 통보, 연기요청(1회에 한함)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

### ● 중대산업재해 발생 +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+ 형의 확정 + 법무부장관의 통보 →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(1년간 게시, 소명기회 부여)

**주요내용** ▲ 해당 사업장의 명칭 ▲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·장소 ▲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▲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(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) ▲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